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13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연월일)	처분사유	처분근거
승한건설(주) 김**,강**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천문로 3 (사동, 한양빌딩3층)	건축공사업 04-0696	등록말소처분 (2021. 1.31.)	사업자 폐업 (2020.10.30.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
(주)비제이종합건설 김**	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208, 2층 (통복동)	건축공사업 10-2942	등록말소처분 (2021. 1.31.)	사업자 폐업 (2020.11.10.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
하림산업개발(주) 조**	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8, 601호 (하안동)	건축공사업 10-2488	등록말소처분 (2021. 1.31.)	사업자 폐업 (2020.11.5.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